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001호

2026년도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6년도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지원규모:** 총 3개사* 내외, 총 1.2억원 이내

구분	지원 금액	모집 규모	비고
예비창업자	2천만원 이내	1개사 내외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초기기업	5천만원 이내	2개사 내외	

* 모집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컨설팅 지원: 기업진단 후 컨설팅 항목 결정

구분	컨설팅 지원 항목	
	국내 사업화 컨설팅	해외 사업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②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③ 디자인·브랜드(BI/CI 등) 개발 컨설팅 ④ 인증,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⑤ 기타	① 브랜드/홍보/마케팅 전략 수립(글로벌/국가별) ② 지식재산권(국제상표, 특허 등) 관련 컨설팅 ③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컨설팅 ④ 수출 관련 컨설팅(수출검사, 서류대행 등) ⑤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컨설팅 ⑥ 기타
판로 개척	① 시장조사 및 분석 ② 공공판로 개척 지원 ③ 유통채널 확보 지원 ④ B2C, B2B 판매전략 수립 ⑤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MOU체결 등) ⑥ 국내박람회·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① 해외 PoC(시장조사, 마켓테스트 등) 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 ③ 해외수출유통채널(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④ 해외 인허가/인증 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MOU체결 등) ⑥ 해외박람회·전시 관련 컨설팅 ⑦ 기타

-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2천만원, 초기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시제품 제작	• 재료비,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 위탁 제작 등 • 시제품 성능 개선, 기술개발 및 공정 고도화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 * [첨부3]
제품 검증	• 시험·분석, 상표·특허 획득, 인증, 현장실증 등	
홍보/마케팅	•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박람회 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 임차비(여비제외)	
수출사업화	• 물류지원, 포장지원(수출에 한함)	

□ 성과목표

-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는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기업별 목표를 함께 제시
- * 협약체결 시 기업별 성과목표 확정하되, 기업진단 및 컨설팅 후 성과목표 변경 가능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2026. 5. 21.(목) ~ 6. 2.(화) 16:00까지

-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 마감일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를 모두 등록하여야 함
- **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접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 **신청방법:** 바다봄지식정보시스템(www.badabom.go.kr)에 접속하여 창업투자 공고/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 신청자격

○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격,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연번	신청 서류	비고
①	프로그램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 통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⑤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초기기업 필수 제출
⑥	최근년도('23~'25년) 결산 재무제표	
⑦	중소기업 확인서	
⑧	창업기업 확인서	예비창업자 필수 제출
⑨	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⑩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해당 시
⑪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은 발급기간(약 2주)을 고려, 사업 신청 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류 평가 통과 후 제출 가능(사전 준비 필요)(발급: <https://cert.k-startup.go.kr/>)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될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함

□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첨부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
- 3년 내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사업화 자금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4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일정**

선정절차	일정	세부내용
신청서 접수	5/21~ 6/2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자격검토	6/2 ~ 6/5	신청자격,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검토
▼		
서류평가	6월 중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발표평가	6월 중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선정	6월 중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원 대상기업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선정절차

○ 사전검토: 신청서류 미제출, 신청제외 대상 탈락조치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5배수 이내) 선정

* (가점사항) 가점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

가점 규모	가점 항목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23~'25) *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선발 시 가점 적용)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발굴 우수기업 • '24년 사업화 R&D 지원사업 우수 기업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우수물류신기술 지정 기술 보유기업 • 해양수산 R&D 기술이전 우수기업

- 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중점 선발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신산업(기술): ①친환경·첨단선박, ②스마트 블루 푸드, ③해양레저관광, ④해양바이오, ⑤해양에너지·자원

** 전통산업 혁신: 해운·조선·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친환경 첨단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분야(첨단기술: (디지털)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 (친환경) 탄소·오염물질저감 기술 등)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서류/발표 평가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함
-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단,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20)	■ 경영역량(재무상태, 조직구성, 전문성 등)	10
	■ 국내외 동향파악 수준,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	10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30)	■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	15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15
사업성 (40)	■ 목표시장 규모,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	20
	■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20
사업비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0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선정자 의무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이행시 선정 취소 처리함
- 지원기업은 협약 종료 후 2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투자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 사업종료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등의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정부지원금 집행은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RCMS를 통해 집행

6

신청 문의

□ 사업내용 및 신청 등 문의

구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전담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02-3460-0376	dbtmf123@kimst.re.kr

첨부 1

창업 인정 기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첨부 2**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업종분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를 기준으로 함

1. 사업비 구분 및 증빙서류

지원항목	세목	내역
시제품 제작	재료비	<p><재료비는 정부지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배송비 포함 가능) * 제품 제작비 제외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만 집행 가능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의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 연관성이 높고, 전담기관이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시설임차료	<p><임차료는 정부지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사업화를 목적으로 시제품 등 생산을 위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 전담기관 담당자가 불시에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 여부 및 사용 목적 확인 * 협약기간 내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 주소지 불가) * 관리비, 보증금 등 월 임대료 제외 비용은 집행 불가 * 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비 집행 불가 * 사무용품, 집기, 가구, 생활가전, 노트북, 태블릿 PC, 차량 등은 집행 불가
	외주용역비	<p><외주용역비는 정부지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개발·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 * 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필수 * 외주용역비는 수행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
	기술이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지원기업의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 규정 우선,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계약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지원항목	세목	내역
		<p>관련 증빙자료 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만 인정 •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만 인정, *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 제외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기간내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건에 한함
제품 검증	시험·분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상표·특허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협약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성공보수,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소요비용은 집행 불가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협약기업명이어야 함(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인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국내외 인증 신규 취득 비용 • 사업화 및 제품, 기술, 서비스 수출을 위한 해외 거래처 요구 인증 취득 비용 집행 가능
기업 홍보	광고 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온라인 홍보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일간지 등의 광고비,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해외 판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제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집행비용 * 입점비,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통역 등
박람회 참가	국내/해외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해외 박람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만 가능 * 여비 집행 불가
	학회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제품 검증 등을 위하여 지원기업 사업수행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경우만 가능

지원항목	세목	내역
수출 사업화 지원	물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시제품, EMS등 해외물류 이용 대금, 운반비, 보관료 등 실 소요비용 지원
	포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포장디자인, 동판, 금형 제작에 든 비용으로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 비용 등 지원 * 포장재 개선 전/후 비교 필수
	통관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사업화 제품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 통관 관련 검사비, 현지 보관 및 창고비용, Ship-back(보관, 보험, 운송, 재적재) 비용 등 * 관세는 지원 제외
	해외현지 시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상품 개선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소비자 관능조사 비용 및 수출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여비 지원 제외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불인정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비목별 집행증빙서류

지원항목	세목	내역
공통	공통	• 비교견적서 :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집행하는 경우 제출 필수
시제품 제작	재료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시설임차료	• 세금계산서, 임대 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외주용역비	•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내용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 필요시 제출 :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
	기술이전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완료보고서 또는 기술이전기업의 승인 공문
	기술개발	• 계획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제품 검증	시험·분석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시험분석서 또는 신청서, 거래내역서
	상표·특허 취득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등록증 또는 신청서, 관납료 영수증
	인증 취득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인증신청서, 인증서, 거래내역서
기업 홍보	광고 선전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홍보제작물 등
	해외 판촉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판촉 결과보고서, 임차 계약서, 거래내역서, 통역비 영수증, 통역요원 ID사본, 통역활동 사진 등 제출
박람회 참가	국내/해외 박람회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통역비 영수증, 통역요원 ID사본, 통역활동 사진 제출
	학회 및 세미나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수출 사업화 지원	물류지원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수출신고필증,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 인보이스, 지출내역
	포장개선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결과보고서(사진), 계약서, 지출내역
	통관 운송	• 수출신고필증, 샘플 송부 및 수령 사진, 인보이스, 지출내역
	해외현지 시장조사	•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